

노인학대 예방 공익브랜드

나비새김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1389, 110, 129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장애인·노숙인 시설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교육교재



발행처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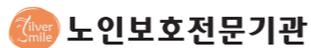
발행인 이기민

편집인 이현민, 이해영, 김재인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76가길 14, 4층

전화 02-3667-1389 팩스 02-2634-5023

홈페이지 www.noinboho.or.kr 인쇄발행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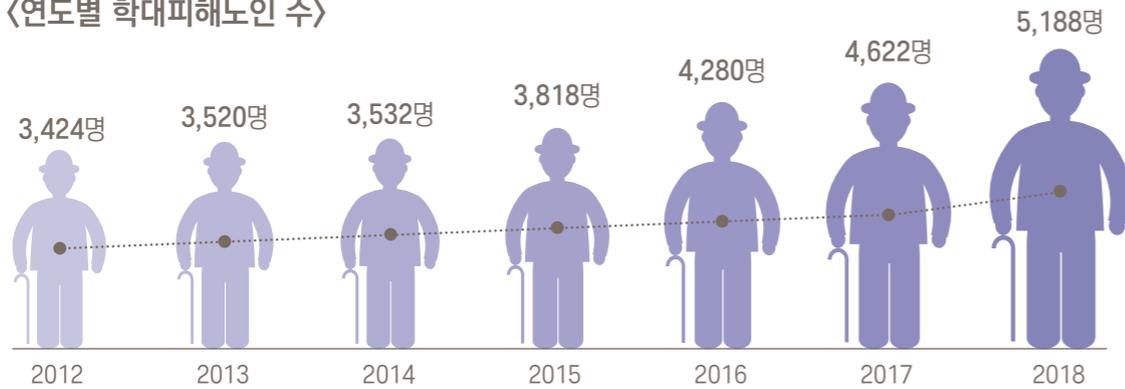
01 노인학대 현황



Q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노인학대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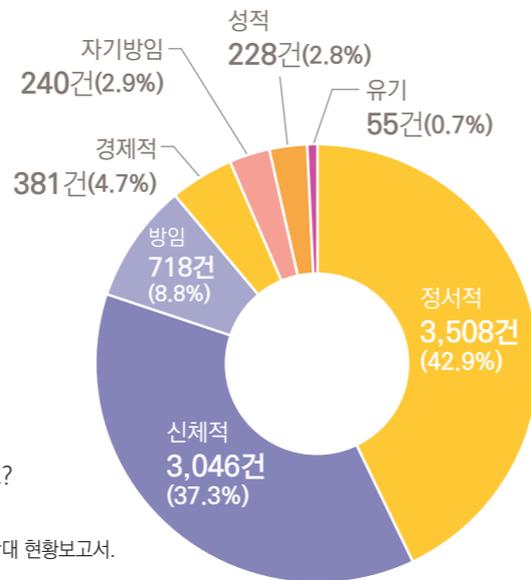


〈노인학대 유형〉

노인 10명 중 1명은
지금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학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 오늘 하루, 노인학대가 의심스러웠던 적이 있었나요?
-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일이겠지...’라는 생각에
모른척 하지는 않았나요?
-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이 노인학대에 해당하지는 않았나요?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9).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02 나는 신고의무자



Q 제가 정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가요?

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Q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만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2호).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노인학대가 오랜기간 반복되고, 점차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Q 신분 노출 걱정 때문에 신고가 꺼려지는데...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네! 노인복지법에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이를 위반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03 노인학대 알아보기

노인학대의 특성

- ① 지속성 : 오랜 기간 동안 학대행위가 계속됨
- ② 복합성 :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함
- ③ 반복성 :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하여 발생함
- ④ 은폐성 : 묵인되고 은폐되며,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음 “그래도 내 자식”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예) 신체 구타 · 억압 · 위협, 밀치거나 넘어뜨림, 강제로 가둠, 이동을 통제함, 생존유지를 위한 식사 · 장치 · 약물 등을 단절함, 약물 및 주사 강제 복용 · 투입, 강제노동 등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예) 반말, 눈을 맞추지 않음, 욕설 등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예) 성관계 강요 및 시도,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성폭행,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 등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예) 노인의 동장을 동의없이 갈취,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노인의 재산사용을 통제함 등



방임(자기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예) 노인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음, 노인이 끼니를 계속 걸러 야웜 등(자기방임: 스스로 식사거부, 비위생적인 집안환경 등)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예) 노인의 시설입소 후 보호자와 연락두절, 낯선장소에 버림 등

04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전기료를 절약한다는 이유로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엘리베이터 전원을 꺼 두었다. 이 시설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식사시간 외에는 2층의 거주 공간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시설 외부에 울타리를 두르고 문을 잠가서 시설 이용자들이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심지어 치매노인의 경우, 시설 밖으로 나가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나일론 줄로 팔과 다리를 침대에 묶어 놓았던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 노숙인 시설에 입소하여 2년간 생활해 온 B노인은 고령으로 인해 배변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로 인해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C노인으로 부터 “자기관리를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구타를 당해왔다. 이를 확인한 노숙인 시설 사회복지사는 학대행위자인 C노인을 해당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상담연계 하였다.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강가정사는 가족상담 중에 B노인의 큰아들이 사업자금 7,000만원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노인의 뒷머리를 손잡이가 있는 뱀비로 내리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노인은 아들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리며 자신은 괜찮다고 일관하고 있다. 건강가정센터에서는 지속적인 전화 상담을 통해 노인의 근황을 살피고 있는 중이다.



정서적 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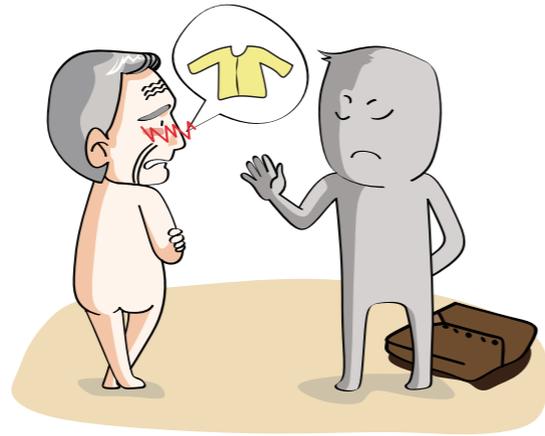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장애인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C노인은 시설에서 아무런 프로그램 진행 없이 하루 종일 TV만 보게 하여, 답답함을 호소하며 전원을 요구하였지만 묵살되었다. C노인은 계속해서 요청하였으나 시설종사자는 점점 C노인의 요구를 못 들은 척하는 행동이 늘고 무시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 노숙인 시설에서 5년간 생활해 온 Q노인은 체력이 약하여 시설에서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J노인이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시설에서 생활할 수 없다며, 은연 중에 노인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일삼았고, 이를 참지 못한 Q노인은 자진 퇴소하여 인근에서의 노숙생활을 다시 시작하였다.
- Z노인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중에 본처 자식들에게 학대 받은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남편과 재혼 후 20년 세월이 지났지만 본처 자식들에게 제대로 대접받은 경험이 없고 늘 무시당하고, 비난받아 왔다고 하였다. 이제껏 자식들한테 누가 될까봐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꺼낸 적이 없으며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으셨다. 얼마 전에도 자식들이 찾아와 재산문제로 협박을 하고 갔지만 자식들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기도 어렵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성적 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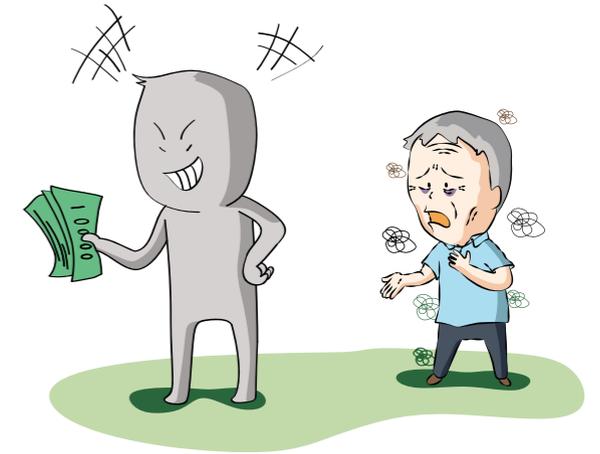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동네 이웃주민인 K는 근처에 장애인 모녀(당시 66세, 42세)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의도적으로 모녀를 도와준다는 핑계로 모녀의 집에 자주 출입하였으며, 밤늦은 시간에도 불쑥 집으로 찾아와 모녀를 수차례 성추행하였다.
- 장애인 시설에서 한 여성 자원봉사자가 목욕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S노인이 “여성이 아닌 남성봉사자가 목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둘 다 늙었는데, 무슨 상관이나”며 강제로 옷을 벗겨 목욕을 시켰다. S노인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고, 그 이후 목욕봉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 F노인과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었으나 안면이 있는 이웃 K노인이 찾아 와서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와 “아내는 여자노릇을 못 한다”며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후 경로당 회장한테 이 사실을 말했지만 K노인을 두둔하기만 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F노인은 그 스트레스로 방광염이 생겨 병원치료까지 받게 되었다며 경찰서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의뢰하였다.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H노인에게 고된 발일을 시키며 용돈 명목으로 담뱃값 정도를 지불해 왔다. 또한 시설장은 지적장애를 가진 H노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직접 데리고 다니는 방법으로 제2금융권 대출, 신용카드 발급, 휴대폰 개통 등 5,000만원 상당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 및 시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오다 최근 시설 종사자의 제보로 국가위원회 직권조사가 의뢰된 상황이다.
- 노숙인 시설에 8년간 거주하고 있는 P노인은 같은 시설에서 호형호제하며 생활하는 Y노인의 부탁으로 모아둔 400만원을 차용해주었다. 그러나 Y노인이 원금을 갚을 시기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아 돈을 돌려 주길 요구했는데, Y노인은 “노인이 노망이 났다”며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다른 입소자들에게 읍소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이에 P노인은 억울함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를 알아챈 Y노인은 그날 밤에 도주하였다.
- G노인은 남편을 여의고 자녀들을 출가시킨 채 홀로 살고 있었으나, 큰딸의 갑작스런 이혼으로 딸과 손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그 후 G노인은 일용직으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딸과 손자가 부양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해결방안이 있는지 문의하였다.

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 장애인 시설에 거주 중인 M노인은 중풍 등 지병을 앓고 있어 혼자서는 거동이 어렵다. 하지만 시설 내 종사자 수가 너무 부족하여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의사나 간호사의 방문도 뜸해 진료를 잘 받지 못하고 있다. 중증장애가 있는 M노인은 도움 없이 음식섭취도 어려워 식사를 항상 부실하게 하는 등 건강상태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자원봉사자가 올 때에나 목욕을 할 수 있었고, 벽과 침구류 등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데다가 시설 주방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있었다.
- 미신고 노숙인 시설의 K원장은 거리에서 상담을 통해 J노인을 입소시켜 시설의 주소지를 근거로 기초생활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원장이 J노인의 통장을 관리하면서도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적질환이 있는 J노인에게 의료지원을 하지 않고, 라면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J노인의 질환은 더욱 악화되었고, 입소 2년 후 시설에서 사망하였다.
- P노인은 1인 가구로 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있지만, P노인의 욕구는 가족들과 함께 살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들은 과거의 P노인의 태도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갖고 있어 동거하기를 꺼렸다. P노인은 심각한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노령연금과 파지를 주워 얻은 수익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최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면접상담과 전화상담을 통해 정서적 위로와 지지를 받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하였다.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지방에 살고 있는 V노인은 젊은 시절부터 매우 심한 음주로 가족들에게 구타 및 욕설 등의 피해를 가하였으며, 도박에 빠져 가족에게 큰 경제적 타격을 주기도 하였다. 과거부터 지속된 V노인의 폭력성향으로 크게 상처 받은 가족들은 고령으로 인하여 치매에 걸린 V노인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보내기로 결정하고, V노인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물색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서울지역의 노숙인 시설 앞에 버리고 도주하였다. V노인의 신원을 확인한 시설과 경찰은 가족들과 연락하여 보호할 것을 설득 하였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부양을 거부하고 있다.

05 노인학대의심사례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신고 시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학대의심사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정보라고 생각하며 지나칠 수 있는 사실들이 오히려 사례파악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모든 정보를 알아야만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고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자 관련정보

- **신고자 인적사항** : 이름, 현 거주지, 연락처 등
-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위**
- **신고자의 욕구** : 노인보호에 대한 욕구, 정보파악 혹은 상담을 위한 욕구, 노인학대 판정을 위해 현장조사 실시에 대한 욕구 등

○ 학대피해노인 관련정보

- **학대피해노인의 현재 상황** : 안전여부, 긴급분리보호여부, 노인의 심신상태 등
- **학대피해노인 인적사항** : 이름, 성별, 나이, 현 거주지, 연락처, 가족관계 등
- **학대내용**

○ 학대행위자 관련정보

- **학대행위자 인적사항** : 이름, 성별, 나이, 현 거주지, 연락처, 직업 등
-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및 동거여부**

○ 학대 관련정보

- **학대 발생여부** : 학대유형, 학대정도 및 심각성, 학대발생일시, 학대발생장소, 학대발생빈도, 학대지속기간 등

○ 시설 관련정보*

- **학대내용** : 시설 관리·운영상의 문제인지, 시설 종사자의 문제인지, 시설내 이용자 간의 문제인지, 시설 내 자원봉사자 및 방문자의 문제인지 파악

※ 노인학대가 시설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시설 관련정보도 파악



이러한 정보를 기록하는 이관서를 작성하는 경우, 간결하지만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관서 작성의 예

〈이관 시 필수 전달내용〉

- 접수일시: 1월 27일 15시
- 상담원 이름: 김수진
- 신고자 이름: 홍길동
- 신고자 전화번호: 010-1234-5678
- 학대피해노인 이름: 홍철수
- 학대피해노인 거주지: 서울시 강남구
- 학대행위자 이름: 이영희

· 접수내용: 신고자는 학대피해노인의 아들이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신고함. 학대피해노인은 치매로 인해 새벽에 홀로 집을 나가 길가에 앉아있는 경우도 있으며, 학대행위자는 그러한 학대피해노인을 보며 무능하다, 나가 죽어라 등의 욕설을 하고 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때리기도 함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조치 관련법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조치는 취약노인으로서의 보호조치와 범죄피해자로서의 보호조치 의미를 갖습니다.

○ 학대피해노인 보호조치 근거법

- 노인복지법

○ 가정폭력으로 인한 학대피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노인학대로 인한 형사절차 진행 관련

-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범죄 피해자 보호법
- 형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기타 취약노인으로서의 학대피해노인 지원 관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법률구조법

○ 성폭력으로 인한 학대피해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06 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안내

사례

노숙인상담센터 **사회복지사**는 센터로 찾아온 한 노인(80)이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고 있다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노인학대(방임)로 신고**하였다. 노인에게 발견된 장소로부터 차로 3시간 이상 가야하는 거주지에서 해당 지역으로 어떻게 왔는지 묻자,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고, 보행에 어려움을 보였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노숙인상담센터로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살던 집의 월세가 올라 더이상 살수가 없게되어 요양원에 입소하려고 하였으나 자리가 없어 배회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상담원은 노인의 자녀 4명에게 연락 하였으나, 모두 지금은 모시러 갈 수 없다고 하거나 다시 연락하겠다고 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유기로 판정한 후, 상담원은 노인이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였던 욕구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입소 가능한 요양원을 알아보는 동시에, 신병인수증을 작성하여 **학대 피해노인 전용쉼터에 우선 입소**하도록 조치하였다.

일주일 후, **인지기능 및 기본 건강검진**을 진행하였으며, 차상위우선돌봄 대상인 노인에게 **병원 의료비를 지원**하였다. 요양원 입소 과정에서 자녀들이 입원비를 뜯어갔기 때문에 따지려 가겠다고 실랑이가 있어 결국 연고가 없는 도시에 거주지를 마련하고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 및 응급 안전 전화기 등의 제도 지원을 연계** 하였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 34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18개의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경우, 건강검진 등의 절차를 거쳐 4개월, 최장 6개월 간 쉼터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단, 치매 등의 질환으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나, 학대피해노인이 아닌 노숙인의 경우 입소가 불가능합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학대피해노인 쉼터생활 지원, 치유 프로그램 제공,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해 학대 행위자 등에게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경우, 쉼터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상담 및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01

02

학대피해노인보호를 위한 지정 양로시설 입소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쉼터 보호 후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학대피해노인의 경우 학대 피해노인보호 지정양로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입소의뢰된 학대피해노인은, 지방자치단체와 양로시설 간 협의를 통해, 입소여부 판정 후 입소가 가능합니다. 양로시설에 입소하더라도, 필요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통해 전문 심리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독, 신체·정신적 문제 등 치료연계

학대사례 개입 시 학대피해노인 또는 학대행위자에게 발생하는 중독 및 신체, 정신 질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치료, 방문간호, 의료기관 입원 및 입원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3

07 노인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



학대행위자 상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 사례 개입 시, 학대피해노인 상담 뿐 아니라 학대 행위자와 그 가족을 위한 개입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학대행위자의 학대유발 요인을 파악하고, 감소·제거 하기 위해 상담을 통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진행합니다. 또한 노인 학대행위로 상담 및 교육, 심리 치료 등의 권고를 받은 경우, 학대행위자의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04

Q 신고의무자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노인학대를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 ① 신속히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 등에 상담·신고합니다.
※ 국번없이 1577-1389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관할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또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신고하는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됩니다.
- ②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합니다.
- ③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112,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생명이 위급한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해야 합니다.

05

법률서비스 지원·연계

학대행위자와의 분리를 위한 법률서비스(법률상담연결, 소송지원, 고소고발) 및 가정법률 상담소와 연계 한 이혼절차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시설 및 의료시설 내 학대 행위로 피해를 받은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률 서비스 지원 및 관내 행정기관의 협조를 통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혼절차 정보제공(가정법률상담소)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할 때에는 가정법률 상담소 등을 통하여 법적 이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진행합니다.

06

노인학대 예방과 대처를 위한 TIP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 시설에서의 노인학대는 주로 방임과 감금 사례가 많습니다. 거동이 어렵고 자기 의사표시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신체를 묶거나 문을 잠그는 등으로 이동을 못하게 하고, 위생관리 혹은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여 장애노인의 건강을 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인학대에 해당함을 명심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항상 민감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장애노인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노숙인시설에서〉

노숙인시설 내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개입하는 시설 종사자가 해당 사례에 대한 책임을 문제시하고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피해자 모두 시설에서 퇴소시키는 방법으로 시설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종종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숙인시설에서 생활인의 퇴소는 깊이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들이 주거 등 적절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퇴소될 경우, 다시 거리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해 또 다른 형태의 노인학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을 경우,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신속한 신고를 전제로 그들이 다시 거리생활로 접어들지 않기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설 내에서의 생활분리, 필요에 따른 전원조치 등의 방법 등 사례에 적절한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의 대상자를 만나게 되며 노인 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해 어르신들과 대면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은 노인학대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신고를 두려워하여 학대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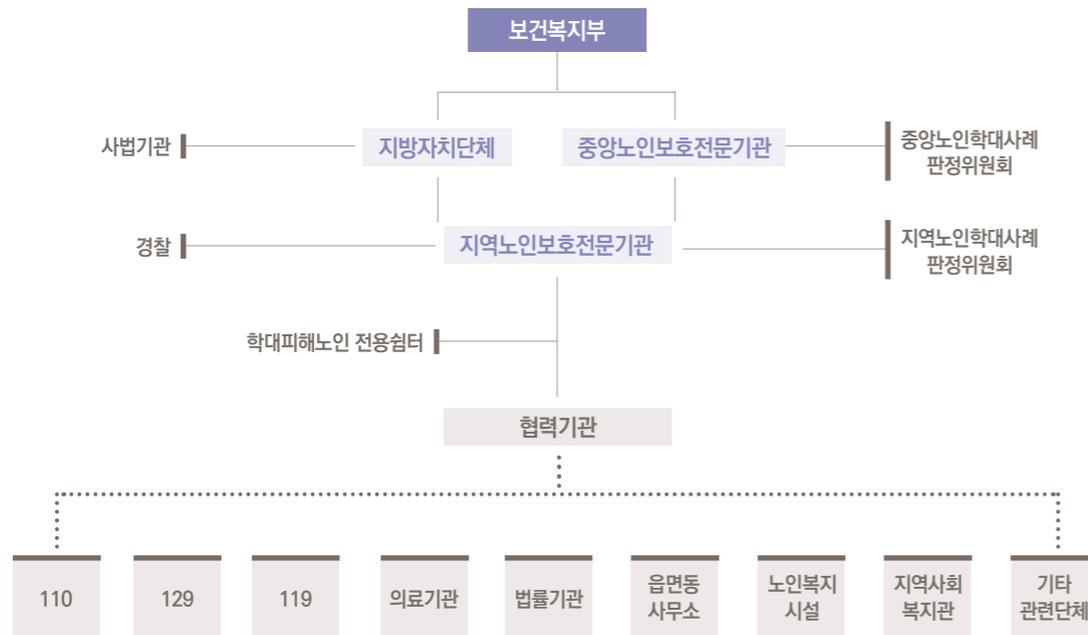
따라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는 어르신들에게 노인학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08 노인보호전문기관 소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근거하여 전국 시·도에서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권의 향상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예방사업 체계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내용



상담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사업

- 전문상담
- 일시보호서비스, 의료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법률지원 연계



교육

노인학대예방 교육사업

-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인권 교육



홍보

홍보사업

- 이동상담 실시, 언론홍보
- 학술행사, 캠페인
- 카툰 및 사진전시회
- 노인학대예방의 날(6.15) 기념행사



협력체계구축

협력체계 구축사업

- 중앙·지역노인학대사례 판정위원회 운영
-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 후원, 자원봉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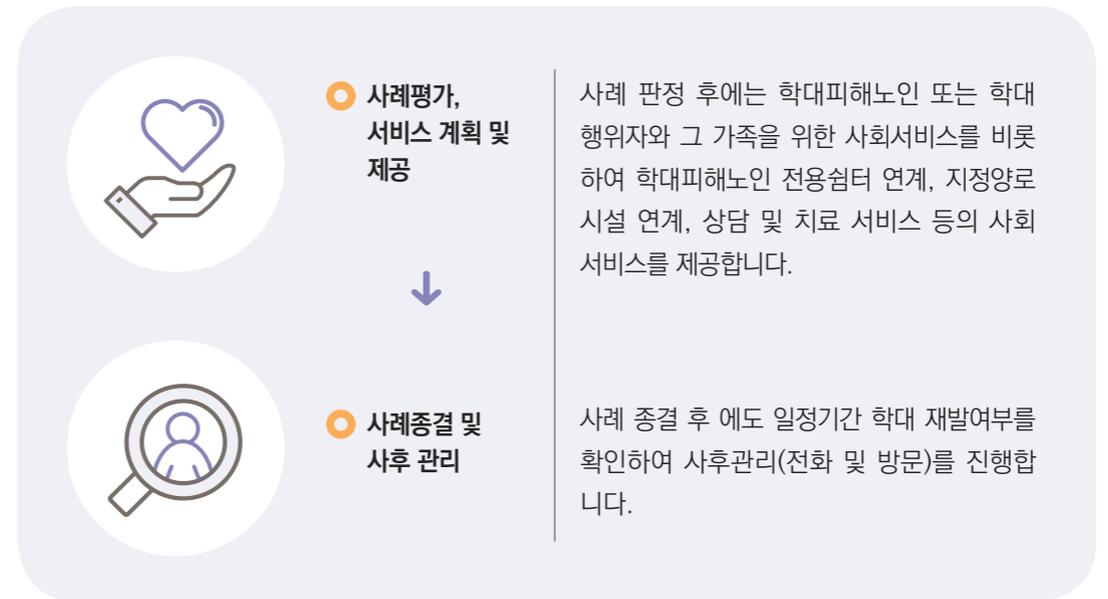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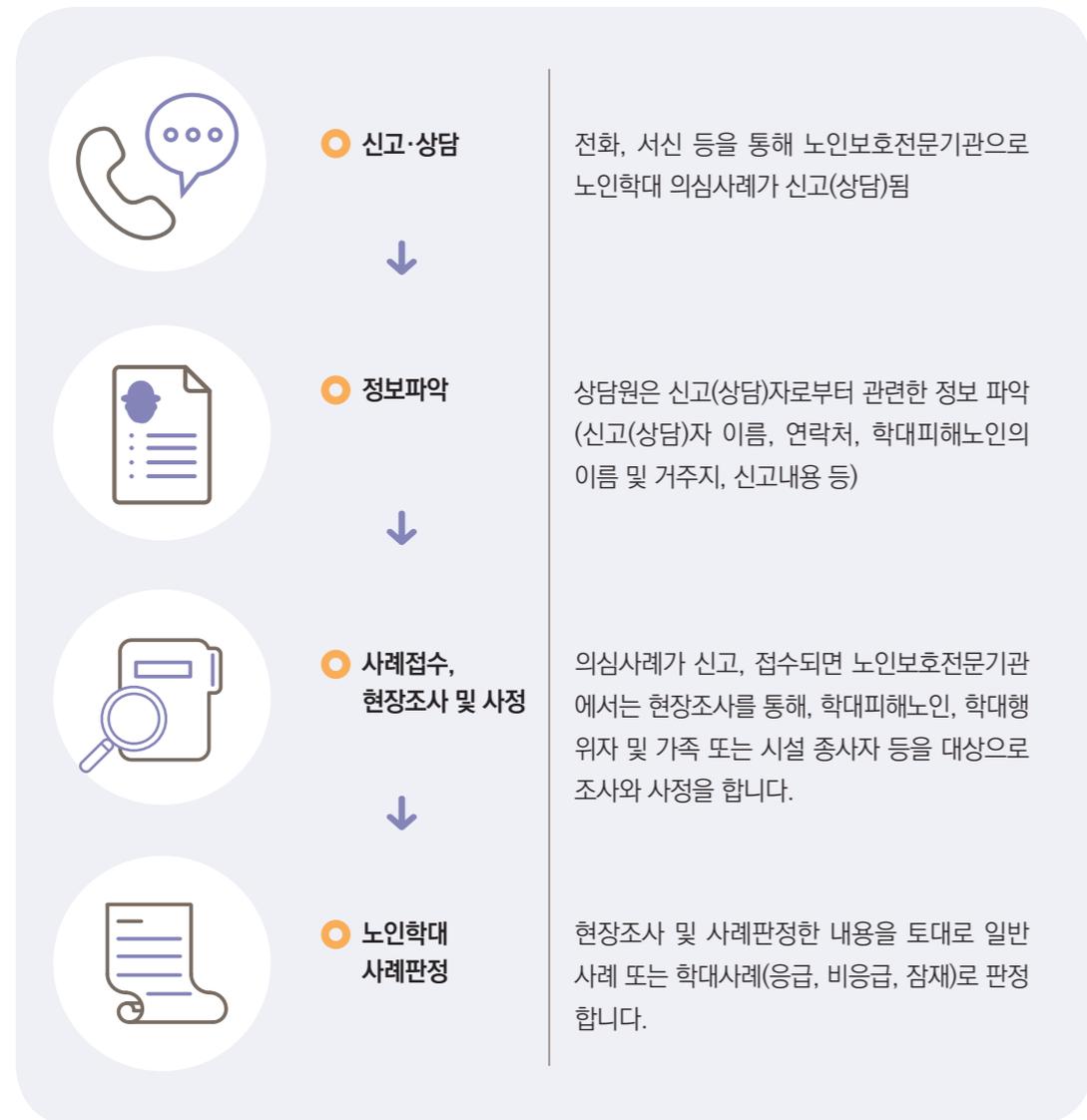
인권보호

노인인권 보호사업

- 노인인식 개선사업
- 효행교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과정



1577-1389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관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학대피해노인의 거주지를 확인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직통번호로 신고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정부민원 안내콜센터 110**으로 신고하는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됩니다.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할 지역 및 전화번호는 27쪽 참고)

09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소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근거하여 보호 및 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만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을 대상으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

만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으로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입소기간

4개월 이내(학대재발의 우려 등 재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하여 연간 총 6개월 이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퇴소 후 원가정 복귀 어려운 학대피해 노인은
지정된 전국 양로시설로 연계하여 입소 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지정 양로시설 등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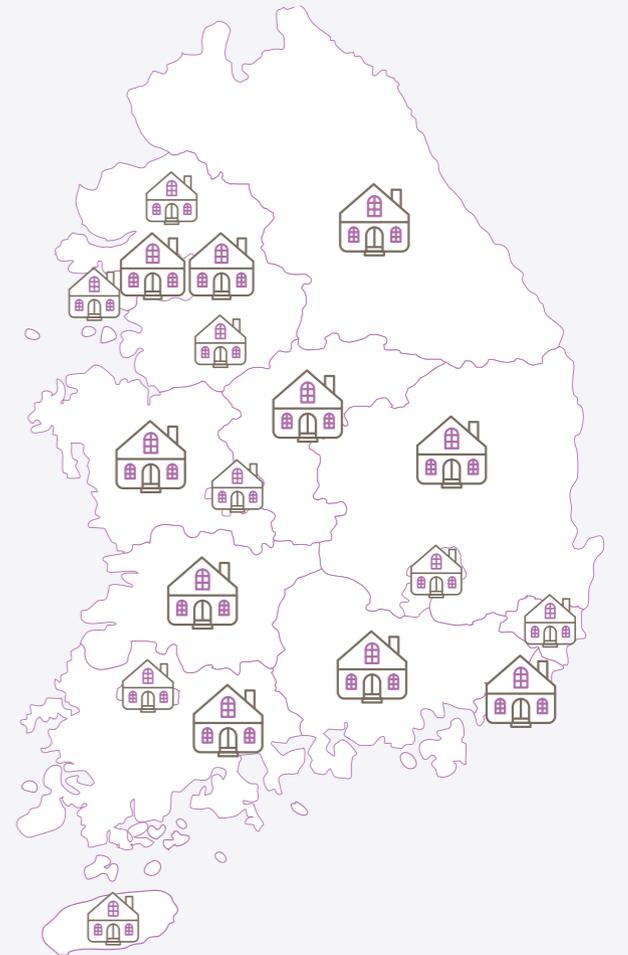
서비스내용

- ①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 ②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 ③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 ④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광역시·도에 18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쉼터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 진행 및 학대행위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처벌기준



법률	내용	처벌
벌칙 제55조의2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 제55조의3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신설)	
벌칙 제55조의4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상해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사망 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때	
벌칙 제55조의4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 제57조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노인학대 금지행위 관련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벌칙 제57조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과태료 제61조의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 노인학대 법적 처벌 기준 : 노인복지법 외 타 법률 적용 가능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10년까지의 기간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안내



(2019. 10. 기준)

시도	전국기관	관할지역	전화번호
중앙		-	02)3667-1389
서울	서울남부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02)3472-1389
	서울북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광진구	02)921-1389
	서울서부	종로구, 중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02)3157-6389
부산	부산동부	중구, 서구, 동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영도구, 남구, 강서구	051)468-8850
	부산서부*	연제구,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진구, 기장군	051)867-9119
대구	대구남부*	남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053)472-1389
	대구북부	중구, 동구, 서구, 북구	053)357-1389
인천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032)426-8792
	인천서부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32)569-0533
광주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062)655-4155
대전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042)472-1389
울산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052)265-1389
경기	경기남부	성남시(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용인시(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이천시, 광주시, 하남시, 의왕시, 과천시, 여주군, 양평군	031)736-1389
	경기북부*	고양시(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031)821-1461
	경기서부*	안양시(만안구, 동안구), 부천시(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032)683-1389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안산시(상록구, 단원구),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031)268-1389
강원	강원*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033)253-1389
	강원동부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033)655-1389
충북	강원남부	원주시,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033)744-1389
	충북*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043)259-8120
충남	충북북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043)846-1380
	충남*	천안시(동남구, 서북구), 아산시, 서산시, 연기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041)534-1389
전북	충남남부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공주시	041)734-1389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덕진구),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063)273-1389
전남	전북서부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063)443-1389
	전남동부*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장성군, 장흥군, 화순군	061)742-3071
경북	전남서부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영광군, 함평군,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신안군, 나주시	061)281-2391
	경북*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영덕군, 청송군, 청도군, 울진군, 울릉군	054)248-1389
	경북서북부*	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상주시, 예천군, 영양군, 의성군, 봉화군	054)655-1389
경남	경북서남부	구미시, 김천시, 경산시, 성주군, 고령군, 칠곡군, 군위군	054)436-1390
	경남*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창원시(진해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성산구, 의창구)	055)222-1389
제주	경남서부	진주시, 사천시,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055)754-1389
	제주*	제주시	064)757-3400
	서귀포시	서귀포시	064)763-1999

* 표시된 기관에서 센터 운영